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, 직업훈련의 제공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‘21.4.20. 일부개정, 10.2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또한,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후 본인 미신청 등의 사유로 미지급 된 주거지원금 잔액이 '20.12월 1,009세대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, 북한이탈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 제32조제1항”을 “법 제16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영 제35조의4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급한다. 다만, 거주지 보호기간”을 “지급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거주지 보호기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6호의3서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장려금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: 30일	
신청인	① 성명		② 하나원 기수		③ 생년월일
	④ 주소				
	⑤ 전화번호				
장려금 지급사유	종류	구체적 사유			
	⑥ 취업	취업기간			
		업종			
	가입보험	[]고용보험 []산재보험 []국민연금 []건강보험			
그 밖의 사유	⑦ 이미 수령한 장려금	[] 해당 없음 [] 직업훈련 [] 자격취득 [] 취업(회)			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제8항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통일부장관 귀하

수수료 없음	
--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인 통장 사본 2. 신청인 신분증 사본 3. 재직증명서 4. 고용·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 신고내역(조회 화면) 5. 신청인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서류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초본(주소지 변동이력을 위한 확인) *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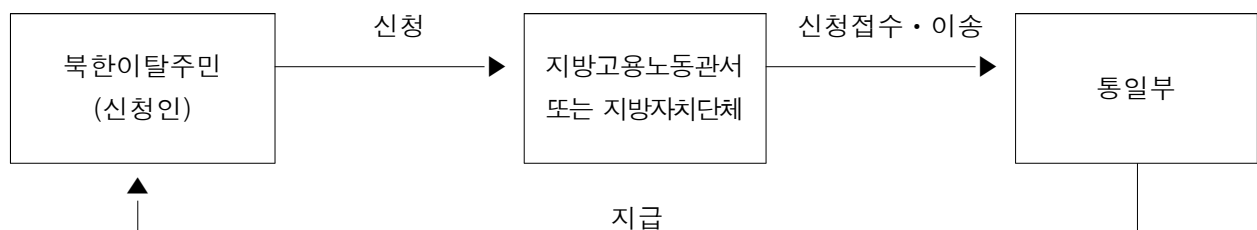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, ②, ③, ④,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.
- ⑥, ⑦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직업훈련의 신청 등) ① <u>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</u>	제3조(직업훈련의 신청 등) ① <u>법 제16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.
② <u>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·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<u>영 제35조의4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주거지원) ① (생략)	제4조(주거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(이하 “주거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<u>지급한다. 다만, 거주지 보호기간</u> 중에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이하 “공공임대주택”이라 한다)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</u> <u>급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100만</u> <u>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거주지</u> <u>보호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~ ⑨ (생략)

-----.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